

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
일부개정법률안
(황운하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0897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8. 28.

발 의 자 : 황운하 · 서왕진 · 정춘생
김준형 · 차규근 · 이강일
장종태 · 강경숙 · 신장식
김선민 · 이해민 · 백선희
김재원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·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시설물의 노후화, 편의시설 및 복지서비스시설 내 장비 설치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그러나 실태조사를 실시하더라도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, 조사 결과가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수립과 집행에 충분히 활용되지 못할 우려가 있음.

이에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태조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실태조

사의 실효성을 높이고,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주거환경을 체계적으로 개선하여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(안 제3조의3제4항 신설).

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
일부개정법률안

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의3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④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의3(실태조사 등) ① ~ ③ (생 략) <u><신 설></u>	제3조의3(실태조사 등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<u>④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</u> <u>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</u> <u>조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</u> <u>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</u> <u>여야 한다.</u>